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법무부장관 추가 등 〉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56호)

2025. 0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법무부장관 추가 등(안 제7조 등)	2
2. 위원장 직무대리 사유에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 추가 (안 제5조제6항)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5. 2. 26.
3. 회 부 일 : 2025.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검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법무부장관 추가 등(안 제7조 등)

개정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검사가 징계사유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u>검찰총장</u> 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 ----- <u>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u> ----- -----.
<u><신 설></u>	<u>1. 법무부장관</u>
<u><신 설></u>	<u>2. 검찰총장</u>
② <u>검찰총장</u> 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u>징계청구자</u> 는-----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u>법무부장관</u> 은 검사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u>검찰총장</u> 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 - <u>징계청구자가</u>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u>검찰총장</u>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u>징계청구자</u> (----- ----- ----)는-----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u>검찰총장</u>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② <u>징계청구자</u> (----- -----

현행	개정안
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는----- ----- ----- ----- -----.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생략)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 ----- ----- <u>경우 징계청구자</u> ----- ----- -----는-----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u>검찰총장</u> (<u>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u>)은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u>징계청구자</u> (----- -----는----- ----- ----- ----- ----- ----- ----- -----.
제18조(징계의결) ① ~ ③ (생략)	제18조(징계의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검찰총장</u> 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u>징계청구자</u> 는----- ----- -----.

검사 징계를 규정한 현행 제7조1)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자이며,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여야 함.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개별 검사에 대하여도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필요시 법무부 검찰관에게 관련 사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바, 검사 징계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법과 개정안의 검사 징계청구자 비교]

징계대상 \ 청구자	현 행		개 정 안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검사(검찰총장 제외)	○	×	○	○
검찰총장	×	○	×	○

참고로,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①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²⁾이 있고, ②검사의 임명·보직에 대한 인사제청권³⁾ 등을 보유하고 있음.

- 1) 「검사징계법」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3)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개별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제권한을 확대하는 바, 검찰총장의 단독 징계권한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측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검찰총장이, 징계심의·의결은 법무부장관이 관할하도록 하여 검사징계에 있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권한을 배분하는 방식인바, 법무부장관에게도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와 같은 당초 제도설계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재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8인⁴⁾의 과반수인 5명이 법무부 소속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직접 선정하는 위원임을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개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까지 허용할 경우, 징계 심의의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한편,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은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제7조의2,⁵⁾ 제7조의3,⁶⁾ 제7조의4,⁷⁾ 제17조의2⁸⁾ 및 제18조⁹⁾의 “검찰총장”을 모두 “징계청구자”로 함께 수정하고 있으나, 제7조의4는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확인 결과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청구자’로 개정할 경우 징계를 청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법무부장관’에게 있는지 ‘검찰총장’에게 있는지 불명확해지는 점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5) 「**검사징계법**」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검사징계법**」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 7) 「**검사징계법**」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 8) 「**검사징계법**」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협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9) 「**검사징계법**」 제18조(징계의결) ① ~ ③ (생략)
④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위원장 직무대리 사유에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 추가 (안 제5조제6항)

현행 제5조제6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위원장 직무대리의 사유로서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⑤ (생략) ⑥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u>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한</u> ----- ----- ----- ----- -----.

현행법상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고,¹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만 징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개정안 제7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전부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할 수 있음.¹¹⁾

10)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개정안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5조제6항을 개정하여 위원장 직무대리의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때”를 추가함으로써, 위원장이 심사대상자의 징계청구자인 경우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음.

다만, ① 이미 현행법 제17조¹²⁾제2항에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도 법무부장관이 징계 청구자인 경우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② 현행법상 “징계를 청구한 사람”인 경우 외에도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인 경우에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데, 다른 제척사유와 달리 “징계를 청구한 사람”인 경우에만 현행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앞서 검토한 개정안 제7조 관련 내용 참조

12) 「**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048